

## 경운대학교 외국인유학생입학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규정은 경운대학교 학칙 제5조2항3조에 의거 외국인유학생 입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.

**제2조(적용)**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은 외국인 유학생에 한하며, “외국인유학생”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.

- ①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
- ②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·중·고등학교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외국인

**제3조(모집학부(과))** 모집학부(과)는 학칙【별표 1】모집단위 모집인원”의 전학과로 한다.

**제4조(지원자격)** 학위과정의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.

- ① 학사학위과정
  1. 국내·외 초·중·고등학교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
  2.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
  3. 학부과정 편입학 대상자 : 외국인으로서 국내·외 전문대학 졸업(예정)자 또는 4년제 대학교에 상응하는 과정을 2년이상 수료한 자
- ② 석사과정 신입학 대상자 : 외국인으로서 대학졸업(예정)자
- ③ 박사과정 신입학 대상자 : 외국인으로서 석사과정 졸업(예정)자

**제5조(모집시기)** 외국인 유학생의 모집은 매학기 1회로 시행할 수 있다.

**제6조(제출서류)** ① 입국전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단, 우리정부가 초청하는 외국인장학생, 외국의 정부가 파견하는 장학생으로 지원하는 자는 서류를 완화 할 수 있다.

1. 입학지원서(우리대학 소정양식) 1부
2. 최종학교 졸업(예정)증명서 1부 - 공증
3. 최종학교 전과정 성적증명서 원본 - 공증
4. 최종학교 학력증명서류
5. 언어능력 증빙서류 1부
6. 출입국 사실증명서(학생, 부모는 해당자에 한함)
7. 전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- 공증
8. 외국국적증명서(학생은 시민권 사본 또는 여권사본, (중국인의 경우 호구부 사본)부모는 해당자에 한함)
9.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 등록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10. 자기소개서 1부(한국어로 자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한국어 작성 불가시 모국어로 작성 후 한국어 번역본과 함께 제출)한국어로 작성 후 한국어 번역본과 함께

제출)

11. 수학기획서 1부(한국어로 자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한국어 작성 불가시 모국어로 작성 후 한국어 번역본과 함께 제출)
12. 재정보증서류
  - 가. 재정보증인 및 학생본인의 미화 \$12,000 이상 은행 등 예금잔고 증명서(1개월 이상 계속 예치)또는 미화 \$12,000 이상 국내송금 또는 환전증명서
  - 나. 재정보증인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, 재산세 과세증명서, 수입증명서
13. 지도교수추천서(대학원과정에 한함)
14. 모집요강에 표기된 기타사항.

② 입국 후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입국여권 사본 1부
2. 졸업예정자 중 합격자는 개강일전까지 졸업증명서 1부
3.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(해당자에 한함)

**제7조(전형방법 및 선발)** ① 해당 학부(과) 교수가 서류심사를 통해 수학능력 여부를 심사한다(한국어 구사능력 및 재정능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)

② 입학사정위원회에서는 서류심사에 대한 판정 결과를 심의·의결하며 최종 선발 여부는 총장이 결정한다.

**제7조의1(언어능력기준)** 유학생의 입학에 필요한 한국어 언어능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(아래 자격 중 1가지 이상 충족자)

1.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3급 이상 합격자
2. 본교 어학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어능력시험 합격자
3. 국외체류자로서 한국어능력시험 응시가 어려운 경우 교류협력대학(기관)에 위탁하여 시험을 실시하여 우리대학에 입학승인을 받은 자
4. 제반 법령에 의한 교육부 장관이 추천하는 위탁생, 교환(교류)학생, 정부초청장학생, 외국정부지원 장학생등은 한국어능력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.

**제8조(학적)** 외국인 유학생이 입학하면 내국인 학생과 동일한 재학생으로 인정한다.

**제9조(권리와 의무)** ① 외국인 유학생은 학칙과 제 규정에 따라 학생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
② 외국인 학생이 학칙과 제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교시킨다.

**제10조(입학등록)** 합격통지서를 받은 외국인 유학생은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등록금 및 입학금을 납입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장학금)**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우리대학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.

**제12조(한국어과정)** 한국어능력시험을 통해 언어능력이 미달되는 외국인학생은 학업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정규 교육과정 이전에 국제교류센터에서 정한 소정의 한국어과정을 이수하여

야 한다.

**제13조(상담)** 외국인학생의 학내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교류센터 상담라운지를 개설하여 운영한다.

**제14조(학적변동)** 외국인학생은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질병, 부상 등의 사유로 4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휴학신청서를 제출하면 허가할 수 있다.

**제15조(제적)** 외국인학생은 다음 각 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적할 수 있다.

1. 30일 이상 장기결석자
2. 출입국관리법 및 국내법 위반자

**제16조(외국인 교환학생)** 교류협력에 의하여 우리 대학교에서 수학하는 외국인학생은 이 규정과 교류협력체결 내용에 따른다.

**제17조(학적변동자에 대한 학적변동사항 법무부 보고)** 국제교류센터장은 법무부 지침에 의하여 학적변동사항(휴학, 제적, 자퇴, 졸업, 행방불명 등) 발생시 2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18조(보험가입)** ① 외국인 유학생은 보건복지부의 기체류 제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"에 의한 건강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② 제①항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다음 학기 수강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.

③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19조(생활관)** ① 생활관에 입주하고자 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소정 기간에 생활관에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② 생활관에 입주 시 해당 생활관 내규를 준수하여야 한다.

**제20조(준수사항)** 유학생은 우리대학에 수학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① 외국인유학생은 대학의 명예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.
- ② 외국인유학생으로서의 신분과 목적이외의 활동을 할 수 없다.
- ③ 외국인유학생은 유학기간이 끝나면 즉시 귀국하여야 한다.
- ④ 외국인유학생은 재학 중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, 체류자격의 활동허가 신고를 하여야 한다.
- ⑤ 외국인유학생은 출입국관리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, 국내 체류기간 및 출입국 관정에 서 일어나는 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.

**제21조(관계법 적용)** 외국인 유학생 관리의 관계 법규의 준용은 다음과 같다.

- ①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출입국관리법, 학칙 등 관련규정과 교류대학과 체결한 교류협력(협정)은 준용하고, 필요할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- ② 외국인 유학생 선발 절차와 학업자도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의 "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 업무 처리요령"을 적용한다.
- ③ 정부초청장학생 등 대한민국 정부사업으로 입학한 외국인유학생은 해당 프로그램 지침

을 우선 적용한다.

제22조(준용) 이 규정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학칙 및 제 규정을 준용한다.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